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96
----------	-----

2019년 9월 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8월 7일, 김혜련 의원 외 30명 발의
-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9월 2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혜련 의원)

- 가. 제안이유
 - 금년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
 - 현행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음.
 -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제10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재 효)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수도요금 감면 규정 및 현황

- 현행 수도 조례는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제1항에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수도요금 감면방법 및 감면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 대하여 월 사용량에서 10m³(3,600원)을 감면해주고 있고, 자가검침 참여 또는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서도 감면을 제공하고 있음.

〈표 1〉 수도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 방법

감면대상(조례 제31조)	감면방법 및 감면율(시행규칙 제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공공목적용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 · 아리수 음수대 설치 초·중·고 및 유치원 ·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 ·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이 정함 · 월사용량에서 10m³을 감면 · 전액 경감 · 사용량의 20% 경감 · 1회당 600원 할인 · 수도요금 1회당 할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만원 이하: 200원 - 2만원 이상: 1%, 총 할인액 1,000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이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20% 경감 · 군부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상위법 검토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¹⁾으로서 동법 제14조(독립채산)에 따라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은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보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조례 개정애 앞서 독립유공자 지원 관련 담당 부서인 복지정책실과 상수도사업본부 간의 예산 관련 협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3) 독립유공자 수도요금 감면 규정 신설(안 제31조제1항제10호)

-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²⁾과 애국지사³⁾를 말하며,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는 총 1,979명임.

〈표 2〉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현황('19년7월말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	본인	유족
순국선열	227	-	227
애국지사	1,762	10	1,752
합계	1,989	10	1,979

※ 보훈처 통계자료

- 1) 관련 규정: 「지방공기업법」 제5조,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 2)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또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해 순국한 자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3)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2019년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서울시는 8월 12일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731억원을 투입하여 생활지원수당 지급, 임대주택 특별공급 및 장학금 신설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대책에는 매월 수도 요금에서 약 3,600원⁴⁾(10m³)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복지정책실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수도요금 감면액 보전을 위한 예산을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⁵⁾ 하였고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조정 중에 있는 바, 감면규정 신설에 대한 이견은 없음⁶⁾.
- 다만, 감면대상인 독립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중으로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시행규칙에 반영되는 감면방법과 감면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되며, 상수도 재정부담 없이 이러한 감면혜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후에도 관련 부서에서 예산 편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감면대상 독립유공자 1,979명×3,600원×12월 ≒85,400천원

5) '20년도 예산안에 독립유공자 상수도 요금 감면액 85,400천원 이호조 입력('19.7.27), 현재 예산담당관실 심의·조정 중에 있음(하수도 요금감면액 94,600천원)

6) 제286회 임시회에 회부된 바 있는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15)은 담당실국에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관계로 현재 심사 보류 중에 있음

[참고자료]

□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2. 생략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9 (생략)</p> <p><신 설></p> <p><u>10.</u>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 ----- ----- -----.</p> <p>1. ~ 9. (현행과 같음)</p> <p><u>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u></p> <p><u>11.</u>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p>